

기술사 교육훈련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정 : 한국기술사회



박수범
한국종합기술 상하수도부
지반팀 부장
parksbv@hanmail.net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제13조·제1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호(‘07.9.10)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25호(‘07.12.25) “기술사 교육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에 대한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술사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제기술사자격 인정절차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
2.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기술사
3.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는 기술사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기술사

② 제1항의 교육훈련 대상이 아닌 기술사는 영 제26조 제3항제6호의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교육훈련 대상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인터넷 제출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기술사회에서는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사 교육훈련 이수기간 산정) ①기술사가 영 시행일('07.7.27, 대통령령 제20206호) 현재 기준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이하 “합격일자”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기산일은 영이 시행되는 날('07.7.27)부터 산정한다.

②기술사가 2이상의 자격을 취득 또는 보유한 경우 최초 취득한 자격의 합격일자를 기준으로 기산일을 정하며, 자격 취득 수에 관계없이 매 3년마다 9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영 별표2 제1호가목의 전문교육은 기술사가 보유한 자격분야를 고려하여 고르게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술사가 퇴직,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3년의 교육훈련 이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기술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훈련 대상 제외 신청서를 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사회는 이를 검토한 후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훈련 대상 제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④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3년 이상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이 아니었던 기술사가 제2조제1항의 교육훈련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근무처 입사일자(또는 개업일자 등)를 기산일로 정한다.

⑤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할 45학점의 교육훈련은 기산일 이전 1년부터 기산일 이후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기술사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수한 교육훈련은 기산일부터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90학점의 교육훈련에 포함한다.

제4조(수강교육 및 자율학습활동의 학점인정 등) ① 규칙 제4조 관련 별표에 의한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의 적용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12조의 규정 및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사 교육훈련 실적보고서에 교육훈련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학습활동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기술사회는 필요한 경우 학점인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기술사 교육훈련 이수학점관리 등) ①기술사회는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 및 이수학점을 산정하여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기술사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기술사회는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사 교육훈련실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의 실적통보 등) ①기술사회는 매년도 말까지 다음 해 교육훈련 대상자 및 소속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안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한 및 학점 사항
2. 교육기관 현황(교육기관 명칭, 개설과정,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3. 통지·안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방법

②기술사회는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통지·안내사항에 관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러하지 아니한다.

기술사 교육훈련 종류별 세부학점 인정기준

1. 수강교육

가. 교육기관 교육(A01)

1)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가중치 : 1/수강시간)

-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영 별표2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각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이수학점으로 인정

2) 국내외 최첨단 기술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국내외 기술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강연회, 토론회, 공청회 등(이하 “세미나 등”이라 한다.)에 참가한 경우, 가중치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하되, 영 별표2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각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이수학점으로는 불인정

인정사항	내용	가중치
국내외 최첨단 기술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1,00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등에 참석한 경우	20/1건
참석	•1,000인 미만이 참석한 세미나 등에 참석한 경우	1/참가시간

나. 법정직무교육(A02)

•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가중치 : 1/수강시간)
-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관련 교육훈련을 이수(법정직무교육)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되, 영 별표2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각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이수학점으로는 불인정. 다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다. 대학전공교육(A03)

• 국내외 석·박사학위 과정 교육(가중치 : 10/이수학점)
- 기술사가 능력향상을 위하여 공학(이학포함)계열 및 경영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시점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되, 영 별표2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각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이수학점으로는 불인정

라. 그 밖에 수강교육(A04)

• 국내외 단체나 업체에서 실시한 기술관련 교육(가중치 : 0.6/수강시간)
- 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회, 관계학·협회(학술단체, 공익법인 포함),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 공식 개최한 기술관련 교육(세미나 등 포함)

2. 자율학습활동

가. 논문 등의 발표 및 저서의 집필(B01)

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기술논문발표회, 연구회, 강연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서의 발표 : 구두발표를 포함한 논문발표(학위취득을 위한 논문발표는 인정하지 않음)

인정사항	내용	가중치
기술사회 및 학회에서의 발표	•100인 이상이 참석한 논문발표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에서의 발표	60/1편
	•100인 미만이 참석한 논문발표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에서의 발표	40/1편
협회 및 민간단체, 기업에서의 발표	•100인 이상이 참석한 논문발표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에서의 발표	30/1편
	•100인 미만이 참석한 논문발표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에서의 발표	10/1편

- 2)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발행하는 기술 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 논문, 보고서 등의 게재 및 기술도서의 집필 등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게재는 인정하지 않음)

인정사항	내용	가중치
기술사회 및 학회에서 발간	• 학술집지 논문의 게재	50/1편
하는 학술지, 기술지 등에 게재	• 일반기술논문, 총설, 기술보고서, 기술제안서 등의 게재	30/1편
협회 및 민간단체, 기업에서 발간하는	• 학술집지 논문의 게재	20/1편
학술지, 기술지 등에 게재	• 일반논문, 총설, 기술보고서, 기술제안서 등의 게재	10/1편

- 3) 기술도서의 집필(번역서를 포함한다)

인정사항	내용	가중치
기술도서의 집필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되었거나 출판된 도서의 집필(공동집필 포함)	50/1편
	• 외국 도서의 번역도서 집필로서 ISBN(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되었거나 출판된 경우(공동번역 포함)	50/1편

나. 연수 등의 강사(B02)

- 1) 인정내용 : 기술사회, 학회, 협회, 대학,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개최하는 연수, 강연, 기술설명회 등의 강사 등(기술사 수강교육 강사로서의 참가를 포함한다)
2) 가중치 : 2/강의시간

다. 기업(연구기관)내 연수 및 OJT(On the job training)(B03)

- 1) 인정내용 : 기술사가 소속한 기업(연구기관 등)내 연수 및 OJT(On the job training)에 참가한 경우 학점인정
2) 가중치 : 1/참석시간

라. 기술지도(B04)

- 1) 인정내용 : 기술사가 소속한 기업(연구기관 등)내에서 수습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지도 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할 때 학점인정
2) 가중치 : 3/지도시간

마.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B05)

- 1) 현장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 제안서가 채택된 경우와 미채택된 경우에 따라 학점 차등인정

인정사항	내용	가중치
현장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 보고서가 채택되어 기술적 성과를 거둔 경우	30/1편
	• 보고서가 채택되지는 못하였지만, 제안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10/1편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의 기술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업무로서 업무수행을 통해 기술적 성과를 거둔(공헌)업무 : 30/1회
3)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을 포함한다)한 업무 : 60/1건

바. 자기주도학습활동(B06)

- 1) 통신교육(종료증서에 따른다) : 기술사가 자신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이 기술사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훈련(통신교육)은 수강교육의 교육기관교육(A01)으로 인정한다. : 1/수강시간
2) 자율학습(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으로서 기술도서의 독서, 비디오 시청 등의 자율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되, 건당 A4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건

- 3)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으로서 학점으로 인정 하되, 참여시간에 대한 현장견학 제공자 측의 확인서 나 1학점당 A4용지 0.5쪽이상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0.6/참여시간(확인서) 또는 1/보고서 (0.5쪽)

나. 업무활동(B07)

- 1) 인정내용 : 기술사가 소속한 기업(연구기관) 등에서의 해당 직무범위와 관련한 기술업무, 연구개발 등에 참여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며, 법 제5조의4제1항 및 규칙 제7조제1항내지제2항에 따라 기술사가 근무처 등을 신고할 경우에 기술업무 수행기간을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 2) 가중치 : 2/참여기간(1개월)

아. 그 밖의 자율학습 활동(B08)

- 1) 기술관련 심의 및 심사활동으로서 기술사가 공적인 기관의 기술관련 심의, 심사, 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 : 1/ 투여시간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한 경우로서 국가기술 자격법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 : 20/1회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심의회, 연구회 등의 위원, 학회 및 협회 등의 임원이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경우로서 기술사가 위원이나 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을 증명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 : 20/1회
- 4) 그 밖의 분야에서 기술사의 계속교육(CPD)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칙 별표1의 자율학습활동 중 B01 내지 B08 이외에 해당하는 자율학습활동 : 0.6/1회

3. 기술사 교육훈련의 과제항목 및 범주

가. 기술사 교육훈련 과제항목

- 부속 별표 제1호와 같다.

나. 기술사 교육훈련의 범주

- 부속 별표 제2호와 같다.

CPD교육 및 기술교육

[부속 별표 제1호]

기술사 교육훈련 범주

• 기술사 교육훈련(CPD) 인증 영역 및 기준(안)

		기술사 교육훈련의 의도범주		
		전문성 신장	전문성 유지	사회봉사
형식 범주	형식	활동분야 관련 학력 인정 교육기관의 강의 수 강 및 학위 취득	학력인정 교육과정에서 강의	학위 논문 심사 / 전문 분야 자격 심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혹은 의원 활동
	비 형식	활동 분야 관련 비학위 교육과정 수강 / 워크 숍, 세미나, 연차대회 및 학술대회, 공청회, 토 론회 참석 / 전문 분야 관련 전시회 관람	비학위 교육과정에서 강의 / 공청회 및 토론 회 주제 발표 / 인증된 단체의 회원 활동	법률 심의회, 전문위원회, 조직위원회, 기술 및 비기술 위원회 참여 / 교육기관의 전문교육과 정 운영 및 학점 편성에 대한 자문과 심사(대 학 포함) / 일반인 대상 강연 활동 / 전문지의 편집 위원 및 논문 심사위원 활동
	무 형식	책, TV 및 라디오, 비디오, 인터넷 등 각종 매 체를 활용한 학습 / 직장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 기 위해 수행하는 학습 / 전문지 및 학술지 논 문 발표 / 협회 및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전문 지식의 발표 / 교과서 및 전문 서적 출판/ 동료들과의 아이디어 및 지식 교류 등이리 활동 / 유관 자격 취득 및 특허 취득	전문 분야 활동(직장 업무 포함) / 실무 관련 연구조사 프로젝트 / 전문 지식을 소개하는 목적의 일반 잡지 및 교양서적 저술 / 산업시 찰	전문성을 발휘한 직접적인 사회봉사 활동 / 멘토링 / 실습생 지도

[부속 별표 제2호]

기술사 교육훈련의 교육과목(과제항목)

구분	종류	내용
A. 기본 교육	A01-윤리	윤리규정, 기술윤리(기술의 인류사회에 미친 장기적·단기적 영향의 평가를 포함한 기술사에게 주어진 공익확보의 책임 등)
	A02-환경	지구환경, 환경 접근, 환경결과의 해결방법 등
	A03-안전	안전기준, 방재 기준, 위기관리, 화학물질의 독성, 제조물 책임법(PL법) 등
	A04-기술동향	신기술, 품질보증, 정보기술, 규격, 설계기준, 시방서(기법, 방법) 등
	A05-사회동향	국내, 해외동향(국제무역동향, GATT/ WTO, DDA 등), 쌍무협정(FTA, 기타 협정) 등에 기술에 대한 요구동향 등
	A06-산업경제동향	내외의 산업경제동향, 노동시장동향 등
	A07-규격·기준의 동향	ISO, IEC, 각종 Code 등
	A08-Management 수단	사업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자원관리, 유지관리, 품질 관리, 리스크관리, 리더십, 사업관리기법의 각종 요소기술 등
	A09-계약	계약, 클레임, 국제적인 계약형태 등
	A10-국제교류	영어에 의한 프리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국제사회의 이해, 각국의 문화 및 역사
B. 전문 교육	A11-재난,재해예방	재난방지, 예방, 대책, 재해 경감 등
	A99-기타	교양(과학기술사 등), 일반사회와의 관계 등 기타 전문분야 이외의 사항
	B01-전문분야의 최신기술	전문으로 하는 기술, 주변기술 등
	B02-과학기술동향	전문분야, 과학기술정책, 해외의 과학기술동향 등
	B03-관계법령	업무에 관련있는 법령(특히 개정 사항)
	B04-사고사례	같은 사고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례 연구 및 사고 해석 등
	B99-기타	기타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항